
IOTC 황다랑어 특별회의(SS04) 참석 결과

2021. 3.



한국원양산업협회

해외수산업협력센터

I 회의 개요

□ **회의명** : IOTC 황다랑어 특별회의(SS04)*

* 영문명 : 4th Special Session of the Indian Ocean Tuna Commission

□ **회의 목적**

○ 인도양 황다랑어 자원상태 악화에 따른 보존관리조치 개정

□ **일시/장소** : '21.3.8.(월)~3.12.(금)/화상회의

□ **참석자**(약 100여명) : 한국, EU, 일본, 중국, 몰디브 등 IOTC 회원국

○ 정부 대표단

이름	기관 및 직위	비고
나일강	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주무관	수석대표

* 업계 및 원양협회 자문으로 참석

○ 해외수산협력센터 참석자 : 원태훈 전문관

□ **주요 의제**

○ 황다랑어 자원회복을 위한 보존관리조치 개정 논의

○ FAD 보존관리조치(결의19/02) 개정 논의

○ 가다랑어 향후 논의 절차 결정

○ 연례회의 진행 방식 결정

II 회의별 세부 의제 및 주요내용

1 황다랑어 보존관리조치 개정 논의

□ EU와 몰디브 황다랑어 제안서

○ 각자의 제안서 소개 후 두 국가는 서로의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 제안서 개정본을 각각 제출

○ (제안서 개정본 주요 내용)

EU 제안서	몰디브 제안서
<p>1. 적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IOTC 협약수역 모든 선박에 적용 • 본 조치는 임시조치이며 '22년 연례회의까지 검토(신설) • 위원회의 MP 채택 시 바로 검토 	<p>1. 적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IOTC 협약수역 모든 선박에 적용 • '22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(신설) 및 '22년 연례회의까지 검토 • 위원회의 MP 채택 시 바로 검토
<p>2. 어획한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선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14년 5,000톤 이상 국가 : '14년도 어획량에서 (18% →) 20% 감축 - 개도국의 경우 17% 감축(신설) - ('17-'19 →) '14-'19년 2,000~5,000톤 국가 : '14-'19년 평균 10% 감축 - 상기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 : ('17-'19 →) '14-'19년 평균 어획량 유지 • 자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14년 5,000톤 이상 국가 : '14년도 어획량에서 (15% →) 20% - 개도국의 경우 17% 감축(신설) - ('17-'19 →) '14-'19년 5,000톤 이상 국가 : '14-'19년 평균 12% 감축 - ('17-'19 →) '14-'19년 2,000~5,000톤 국가 : '14-'19년 평균 8% 감축 - 상기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 : ('17-'19 →) '14-'19년 평균 어획량 유지 • 연승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14년 5,000톤 이상 국가 : '14년도 어획량에서 (15% →) 20% - 개도국의 경우 17% 감축(신설) 	<p>2. 어획한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선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14년 5,000톤 이상 국가 : '14년도 어획량에서 (35% →) 25% 감축 (SIDS 18% (신설)) - '14년 5,000 미만, '14-'19 평균 2,000톤 이상 국가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선진국 : (20% →) 25% 2) 개도국 : (16% →) 20% (SIDS 14% (신설)) - '14-'19 평균 2,000톤 미만 국가는 '19년도 어획량 유지 • 자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14년 5,000톤 이상 국가 : '14년도 어획량에서 (20% →) 15% 감축 - '14년 5,000 미만, '14-'19 평균 2,000톤 이상 국가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선진국 : (20% →) 15% 2) 개도국 : (16% →) 12% - '14-'19 평균 2,000톤 미만 국가는 '19년도 어획량 유지 • 연승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14년 5,000톤 이상 국가 : '14년도 어획량에서 (20% →) 15% 감축 - '14년 (2,000톤 →) 5,000톤 미만, '14-'19 평균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'17-'19 →) '14-'19년 5,000톤 이상 국가 : '14-'19년 평균 12% 감축 - ('17-'19 →) '14-'19년 2,000~5,000톤 국가 : '14-'19년 평균 8% 감축 - 상기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 : ('17-'19 →) '14-'19년 평균 어획량 유지 • 기타 어구 - '14년 5,000톤 이상 국가 : '14년도 어획량에서 10% 감축 - ('17-'19 →) '14-'19년 5,000톤 이상 국가 : '14-'19년 평균 8% 감축 - ('17-'19 →) '14-'19년 2,000~5,000톤 국가 : '14-'19년 평균 4% 감축 - 상기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 : ('17-'19 →) '14-'19년 평균 어획량 유지 	<p>2,000톤 이상 국가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선진국 : (20% →) 15% 2) 개도국 : (16% →) 12%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타 어구 - '14년 5,000톤 이상 국가 : '14년도 어획량에서 (11% →) 9% 감축 - '14년 5,000톤 미만, '14-'19 평균 2,000톤 이상 국가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선진국 : (11% →) 9% 2) 개도국 : (8% →) 6% - '14-'19 평균 2,000톤 미만 국가는 '19년도 어획량 유지 • 국가 총 어획한도는 모든 어구 한도의 합이며, 한 어구의 초과어획량은 다른 어구에서 상쇄 가능 - 어구별 한도 재분배는 사무국에 보고(신설) - 2,000톤 미만 국가들은 2,000톤까지 허용(신설)
<p>3. 공급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'20년 1월부터 공급선 2척은 선망선 5척 이상 지원 금지 • '17년 3월부터 추가 공급선 등록 금지 • 공급선 1척은 선망선 1척 이상 지원 금지(신설) 	<p>3. 공급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'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선 2척은 선망선 5척 지원 금지 • '22년 1월부터 '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선 3척은 선망선 10척 지원 금지 • '24년 12월 31일 이후 공급선 사용 금지
<p>4. 행정 및 과학위 업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선망/대형 연승(24m 이상) 어종별 어획량 사무국에 월간보고, 한도 80% 도달 시 주간보고 • 5개의 과학위 업무 추가 제안 	<p>4. 행정 및 과학위 업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학위원회는 황다랑어 관리절차 수립을 우선순위로 설정(신설)

- (주요 의견)

EU 제안서	몰디브 제안서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일본) 황다랑어 보존조치가 '16년부터 시작했음을 고려하여 기준년도는 '17년부터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 사료. 고래류 부수어획 보고 조항(39항) 삭제 입장 견지 • (한국) 어구 별 5,000톤 이상 조업국 감축률은 현행(결의19/01)의 감축률(15%) 유지 주장 • (몰디브) EU가 제안한 과학/보고 조항들은 개도국들에게 불공평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, 회원국들은 과학업무에 참여 가능한 인원이 달라 특정 회원국의 과학업무를 주도하게 되어 과학업무의 정치화 변질 가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일본) 개도국/선진국 차등 어획감축 동의 하나, 공급선 전면 금지 동의 불가 • (EU) 공급선 일본과 입장 동의. 지난 6년간 어획감축 이행실적 고려해야 할 것 • (한국) 5,000톤 이상 국가들 추가 감축 수용 불가. 2,000~5,000톤 국가들(신규로 감축이 적용되는 국가들)이 해야 할 것 • (중국) 국가마다 상황 다르니 국가별 다른 기준년도 적용 고려 필요 • (인도) 인도양 황다랑어 자원 악화에 책임이 있는 국가들만 어획량 감축해야 할 것

<p>성 우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중국) 어획량 보고는 월간보고가 아닌, 현재되고 있는 2년 전 자료 이용을 1년 전 자료 이용으로 우선 개정되어야 할 것. 보고 의무로 인한 회원국과 사무국의 업무 증가 가능성에 우려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남아공, 케냐) 본 제안서 지지
---	--

- (논의 결과) 의장은 두 제안서로는 합의 도출이 어려움을 설명하며 EU와 몰디브가 제안서를 하나로 통합하기를 제안하였고,
 - 이에 EU와 몰디브, 일부 연안국들이 모여 두 제안서를 하나로 통합

□ EU/몰디브 통합 황다랑어 제안서

○ (통합 제안서 주요 내용*)

* EU와 연안국 사이 합의가 나지 않은 부분은 괄호로 표시

조 항	주요 내용
적용	(1항) 선박 길이 및 조업 수역 상관없이(신설) IOTC 협약수역에서 조업하는 모든 어선 (2항) '22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 및 '22년 연례회의까지 검토
어획한도	<p>(5항) 선망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a. '14년 5,000톤 이상 국가 : '14년도 어획량에서 20% 감축 b. '14년 5,000 미만, '14-'19 평균 2,000톤 이상 국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[연안] 개도국 : 17% 감축 2) 비개도국 : 20% 감축 c. '14-'19 평균 2,000톤 미만 국가는 '19년도 어획량 이하로 유지 d. (a), (b2)에 해당되는 SIDS 국가 : (a) 16%, (b2) 12% 감축 <p>(6항) 자망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a. 14년 [EU 5,000]/[연안국 2,000]톤 이상 국가 : '14년도 어획량에서 [EU 20]/[연안국 15]% 감축 b. '14년 [EU 5,000]/[연안국 2,000]톤 미만, '14-'19 평균 2,000톤 이상 국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[연안] 개도국 : [연안국 12]/[EU 17]% 감축 2) 비개도국 : [연안국 15]/[EU 20]% 감축 c. '14-'19 평균 2,000톤 미만 국가는 '19년도 어획량 이하로 유지 <p>(7항) 연승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a. '14년 5,000톤 이상 국가 : '14년도 어획량에서 [연안국 15]/[EU 20]% 감축 b. '14년 5,000 미만, '14-'19 평균 2,000톤 이상 국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[연안] 개도국 : [연안국 12]/[EU 17]% 감축 2) 비개도국 : [연안국 15]/[EU 20]% 감축 c. '14-'19 평균 2,000톤 미만 국가는 '19년도 어획량 이하로 유지 <p>(8항) 기타 어구</p>

	<p>a. '14년 5,000톤 이상 국가 : '14년도 어획량에서 10% 감축</p> <p>b. '14년 5,000 미만, '14-'19 평균 2,000톤 이상 국가</p> <p>1) [연안] 개도국 : 8% 감축</p> <p>2) 비개도국 : 10% 감축</p> <p>c. '14-'19 평균 2,000톤 미만 국가는 '19년도 어획량 이하로 유지</p> <p>(9항) 국가 총 어획한도는 모든 어구 한도의 합이며, 한 어구의 초과어획량은 다른 어구에서 상쇄 가능</p> <p>- (9bis) 어구별 한도 재분배는 사무국에 보고</p> <p>- (9tera) 2,000톤 미만 국가들은 2,000톤까지 허용</p> <p>(11ter) 6~9항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들이 '18-'21년 사이 한도(6~9항에 설정된 기준 어획량) 도달 시, 6~9항에 따른 어획한도 설(신설)</p>
초과어획	(12bis) 결의19/01 어획 감축률을 '19년에 30% 이상 초과한 국가는 5% 추가 감축 (EU 제안)
공급선 (연안국/EU 합의 미도출)	<p>[연안국 제안]</p> <p>- '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선 2척은 선망선 5척 이상 지원 불가</p> <p>- '22년 1월 1일부터 '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선 3척은 선망선 10척 이상 지원 불가</p> <p>- '24년 12월 31일 이후 공급선 이용 금지</p> <p>[EU 제안]</p> <p>- '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선 점진적 감축. 국가들은 공급선 감축 현황을 연례 보고서를 통해 이행위에 보고</p> <p>- '20년 1월 1일부터 공급선 2척은 선망선 5척 이상 지원 불가</p> <p>- 신규/추가 공급선 등록 불가</p> <p>- 공급선 1척은 선망선 1척 이상 지원 금지</p> <p>- 결의19/02(FAD) 보완 목적으로, 기국은 다음 해 1월 1일 전까지 어떤 선망선이 어떤 공급선의 지원을 받는지 매년 보고</p>
행정	<p>(25bis) 국가들은 사무국에게 [매달]/[2달에 한 번] 선망 및 24m 이상 연승선의 어종별 잠정 어획량 보고, 한도 80% 도달 시 [매주]/[2주에 한 번] 보고</p> <p>(25tera) 25bis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들은 [4~6달 마다] 자국 열대다랑어 잠정 어획량 보고</p> <p>(25quater) 국가 한도의 80% 도달시 사무국장은 해당 국가에게 통지. 100% 도달 시 해당 국가는 조업 폐쇄 및 폐쇄일 사무국장에게 통지</p> <p>(27bis) 과학위 및 작업반들은 황다랑어 관리절차를 업무 우선순위로 설정</p>

- (논의 내용) 본 통합 제안서 논의는 제1항(적용)에서부터 합의 도출에 실패
- 한국, 일본, EU, 몰디브 등은 현행 결의19/01의 황다랑어 자원 관리 실패 주원인이 면제 국가들임을 설명하는 SC 권고를 상기하며 개정 시에는 감축 면제 대상을 삭제해야 함을 주장하였고,
- 인도, 오만 등은 연안국의 소규모 어민들의 생계를 위해 EEZ에서 조업

하는 24m 미만 선박들은 어획량 감축에서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

- **(논의 결과)** 일부 연안국들의 반복되는 면제 요청에 일본 등 국가는 연안국 소규모 어선을 면제하였을 시 발생할 상황을 먼저 파악하자고 제안
 - 단, 기존 면제 대상인 24m 미만 선박이 아닌 10~15m 선박을 감축 대상에서 면제한다고 전제를 하였으며,
 - 일본과 중국 등은 올해 연례회의 일정(6월 예정)을 고려하여 5월 1일 까지 연안국들에게 자국 10~15m 이하 선박들의 황다랑어 어획량 데이터를 사무국에게 제출하기를 요청하였고,
 - 본 데이터 제출은 의무가 아닌 자발적 기여이며, 제출된 데이터는 잠정 데이터로써 오직 해당 크기의 선박들을 면제하였을 시 황다랑어 어획량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임을 강조하였음
 - 본 데이터 분석은 의장이 제안한 회기간 계획에 따라 연례회의 전까지 회기간 논의와 함께 진행 예정

2 FAD 보존관리조치 개정 논의

□ 케냐/스리랑카 FAD 개정 제안서

- **(논의 배경)** 케냐 등 국가는 인도양 황다랑어 자원회복을 위한 선망선 규제를 강조하며 DFAD*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춘 FAD 보존관리조치 개정 제안서를 제출

* Drifting Fish Aggregating Devices : 주로 선망선이 이용하는 해저 바닥에 고정되지 않고 수면 위에 떠다니는 어류군집장치(FAD)

- **(논의 내용)** 본 FAD 조치 개정 논의는 소작업반 개설을 통해 진행

조 항	주요 논의
FAD 정의	(1항n) FAD 정의 - (일본, 한국, EU) 케냐 등이 제안한 WCPFC FAD 정의는 불필요한 이행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가 많은 정의니 IOTC에 도입 반대 - (케냐) 합동 FAD 작업반에서 RFMOs의 FAD 정의를 일치하도록 제안한 바 있음. 이에 타 RFMO 정의 도입은 적절
FAD 한도	(4항) bouy 개수 제한 - (EU, 한국) 제안된 bouy 감축치에 대한 어떠한 과학적 근거/SC 조언 없음. 현

	<p>bouy 수치의 SC 검토 선행되어야 할 것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일본) bouy 수치는 타협 가능하나, SC 조언 없이 진행되는 개정 논의 절차에 우려 - (케냐 등 연안국) 황다랑어 자원 악화가 심각하여 SC 조언 기다릴 수 없기에 제한된 예방적 조치로서의 수치
DFAD 금어기	<p>(17항) 7-9월 금어기 설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EU) 금어기를 설정하려면 DFAD 뿐 아니라 AFAD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 - (한국) 금어기 관련 SC 조언 없었으며, 기간이 7~9월이어야 하는 과학적 근거도 부족 - (일본) 금어기 설정은 비금어기에 어획이 몰려 효과가 떨어지니 FAD 투망 횟수 제한이 더 효과적일 것 - (케냐) 다른 RFMO에서 실행하고 있는 조치를 가져왔을 뿐이며, 일본 등 국가들 다른 RFMO에서 다 동의하였으면서 IOTC에서 동의 안 하는 것 이해 안 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→ (일본) 수역마다 일본 선단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무작정 동일 기준 적용은 비현실적 → (한국) WCPFC는 FAD 금어기 논의 시작 전 SC 연구 많이 이뤄졌고 SC 분석 자료에 기반하여 위원회가 논의하였으므로 현 IOTC 상황과는 전혀 다름
DFAD 마킹	<p>(29항) DFAD에 소유주 정보를 담은 영구적 라벨 부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한국) DFAD 뿐 아니라 AFAD도 관리 필요하므로 라벨 부착 필요 - (몰디브) 몰디브의 모든 AFAD는 정부 소유물이며 정부가 직접 관리 중임. 원한다면 AFAD 조항 신설 가능

- (논의 결과) 큰 이견으로 인하여 제안서 중 한 부분도 합의가 나지 않아 회기간으로 논의 지속 결정

3 황다랑어 최소크기 논의

□ 스리랑카 최소크기 제안서

- (논의 배경) 스리랑카는 황다랑어 자원 회복을 위해서는 단순 어획량 감축으로는 부족함을 설명하며, 추가로 소형어 어획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92cm 미만 황다랑어 어획 금지를 제안
 - (논의 내용) 본 제안에 대하여 대부분의 회원국은 회의적 반응을 보였음
 - 일부 회원국은 본 제안이 92cm 이하 황다랑어의 폐기로 이어지게 되어 IOTC 결의19/05(어획물 폐기금지)와 상충하게 됨을 지적하였고,
 - 크기 제한으로 나타나는 high-grading*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었음
- * TAC 등으로 인해 어획량이 한정될 경우 고품질 어획물만 선상 보유하고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는 어획물은 바다에 폐기하는 행위

- 이와 더불어, 92cm 크기 제한과 함께 스리랑카가 제안한 10.3m 이하 선박 면제 기준 등이 모두 스리랑카 자체 기준일 뿐 위원회 SC의 분석 및 권고가 없음이 지적되었음
- (논의 결과) 본 제안서의 과학적 근거 부족이 지적되자 먼저 SC가 본 제안서를 검토하게 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나,
 - 92cm 크기 제한의 의미를 알 수 없으니 단순 시간 낭비일 뿐이라 주장하는 일본의 반대로 SC 검토도 무산됨
 - 스리랑카는 연례회의에서 본 제안서 수정하여 재제출 예정